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단서 중 “지원사업”을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 전체 합의로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로부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주민지원사업 범위(비율)에 대한 주민 서명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받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 제1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5조제2항 관련)”을 “(제25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⑥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u>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u> ----- --.
제22조(지원사업의 방법) ① <u>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은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u>	제22조(지원사업의 방법) ① <u>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 전체 합의로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로부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주민 지원사업 범위(비율)에 대한 주민 서명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받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u>

② (생략)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u>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 1. <u>사업자별 지원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u> 2. <u>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u> 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이하 “사업자별 지원금”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의 세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u>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u><삭제></u> <u>법 제10조제3항 제1호</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연 락 처	(044) 203 - 3931